

입법예고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0. 9.



농림축산식품부
검역정책과

1. 개정이유

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·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, 법제처 「과태료 금액 지침('19.2)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병해충 발생·예찰·방제 홍보 강화(안 제3조의4제3항제5호 신설)

- 1) (주요 내용) 병해충 발생·예찰·방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「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(농진청 주관)」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‘병해충 발생·예찰·방제에 관한 홍보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- 2) (개정 사유) 병해충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여 예찰·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「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」에 홍보 임무를 부여하고자 함

나.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(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)

- 1) (주요 내용)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,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(시·도)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2) (개정 사유) 손실보상금을 분담하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입법례, 「식물방역법」 체계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시·도)의 손실보상금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하여 방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 규정 정비(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)

- 1) (주요 내용) 장애인,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
- 2) (개정 사유) 대부분 법령(243개 중 218개)에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「식물방역법」 시행령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

라.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(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)

- 1) (주요 내용)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거짓 진술 또는 규제병해충 미신고 등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
- 2) (개정 사유) 법제처 「과태료 금액 지침('19.2)」에 따라 과태료가 현저히 낮거나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법령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마. 손실보상금, 과태료 관련 적용시점 명확화(부칙 신설)

- 1) (주요 내용) 손실보상금이 개정안 공포·시행됨과 동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용 시점 명확히 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둠
- 2) (개정 사유) 식물방역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병해충 발생·예방·방제에 관한 홍보

제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”를 “제4항까지”로 한다.

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, 그 나머지 금액은 시·도지사가 지급한다.

별표 제1호다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1회란 “1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가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2회란 “20”을 “2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가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 “40”을 “4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가목의 3)의 과태료 금액의 1회란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가목의 3)의 과태료 금액의 2회란 “100”을 “2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가목의 3)의 과태료

금액의 3회 이상란 “200”을 “4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나목의 과태료 금액의 1회란 “25”를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나목의 과태료 금액의 2회란 “50”을 “2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나목의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 “100”을 “3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1회란 “25”를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2회란 “50”을 “2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 “100”을 “4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너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1회란 “10”을 “15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너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2회란 “20”을 “25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너목의 1)의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 “40”을 “4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너목의 2)의 과태료 금액의 1회란 “100”을 “15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너목의 2)의 과태료 금액의 2회란 “200”을 “25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4(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·② (생략)	제3조의4(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 ~ 4. (생략)	③ ----- -----.
<u><신설></u>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5. <u>병해충 발생·예방·방제에 관 한 홍보</u>
제4조의2(손실보상 범위 등) ① ~ ③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제4조의2(손실보상 범위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.	④ <u>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, 그 나머지 금액은 시·도지사가 지급한다.</u>
	⑤ ----- <u>제4항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조 관련)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일반기준 가~나. (생 략) 다.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1) ~ 2). (생 략) 라. (생 략) 2. 개별기준		1. 일반기준 가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1) ~ 2). (현행과 같음) 라. (현행과 같음) 2. 개별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 문</th>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</tr> <tr> <th>1회</th><th>2회</th><th>3회 이상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</td><td>법 제50조 제2항 제1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1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</td><td></td><td><u>10</u></td><td><u>20</u></td><td><u>40</u></td></tr> <tr> <td>2) (생 략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3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</td><td></td><td><u>50</u></td><td><u>100</u></td><td><u>200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	1회	2회	3회 이상	가.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1호				1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10</u>	<u>20</u>	<u>40</u>	2) (생 략)					3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50</u>	<u>100</u>	<u>200</u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 문</th>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</tr> <tr> <th>1회</th><th>2회</th><th>3회 이상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</td><td>법 제50조 제2항 제1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1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</td><td></td><td><u>100</u></td><td><u>200</u></td><td><u>400</u></td></tr> <tr> <td>2) 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3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</td><td></td><td><u>100</u></td><td><u>200</u></td><td><u>400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	1회	2회	3회 이상	가.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1호				1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100</u>	<u>200</u>	<u>400</u>	2) (현행과 같음)					3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100</u>	<u>200</u>	<u>400</u>
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	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회	2회	3회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1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10</u>	<u>20</u>	<u>4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)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50</u>	<u>100</u>	<u>2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회	2회	3회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1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100</u>	<u>200</u>	<u>4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)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		<u>100</u>	<u>200</u>	<u>4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) (생 략) 나. 법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것으로 진술한 경우	법 제50조 제3항 제1호	<u>25</u>	<u>50</u>	<u>100</u>
다.~차. (생 략)				
카. 법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2호			
1)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(보관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		<u>25</u>	<u>50</u>	<u>100</u>
2)~3) (생 략)				
타.~거. (생 략)				
너.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4호			
1)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식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		<u>10</u>	<u>20</u>	<u>40</u>
2)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		<u>100</u>	<u>200</u>	400
3) (생 략)				
더.~러.(생 략)				

4) (현행과 같음) 나. 법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것으로 진술한 경우	법 제50조 제3항 제1호	<u>100</u>	<u>200</u>	<u>300</u>
다.~차. (현행과 같음)				
카. 법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2호			
1)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(보관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		<u>100</u>	<u>200</u>	<u>400</u>
2)~3) (현행과 같음)				
타.~거. (현행과 같음)				
너.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0조 제2항 제4호			
1)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식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		<u>150</u>	<u>250</u>	<u>400</u>
2)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		<u>150</u>	<u>250</u>	400
3) (현행과 같음)				
더.~러. (현행과 같음)				